

예산총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511,715,198 | 15,351,456 |
| 일반회계 | 484,251,944 | 14,527,558 |
| 특별회계 | 27,463,254 | 823,898 |
| 기타특별회계 | 27,463,254 | 823,898 |
|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| 1,437,206 | 43,116 |
| 섬진강댐특별회계 | 1,602,837 | 48,085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585,768 | 17,573 |
|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| 979,453 | 29,384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2,124,390 | 663,732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733,600 | 22,008 |

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

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

제 4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23,800,000천원」으로 한다

제 5 조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3,932,029천원」과 같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